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비공식번역본)

ISPM 4

병해충무발생 지역 설정을 위한 요건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Pest Free Areas

(1995)

FAO/IPPC 사무국

인용 시 요구되는 문구:

FAO. 1995.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pest free areas*. International Standard for Phytosanitary Measures No. 4. Rome. FAO on behalf of the Secretariat of the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이 정보물 내에 적용된 명칭(designation)과 자료의 표현(presentation)은, 법적 또는 어느 나라의 개발 상태, 영토, 도시 또는 지역 또는 이들의 권한과 관련되거나 또는 국경 또는 영역의 경계 설정과 관련된, UN의 세계 식량 및 농업기구(FAO)의 부분에 대한 어떠한 의견 표명을 전혀 의미하지 않는다. 특정 회사 또는 생산자의 물품에 대한 언급은, 이들이 특허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이들이, 언급되지 않은 유사한 다른 것에 우선하여, FAO에 의해 승인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정보물에 표현된 의견은 저자들의 의견이며 FAO의 의견이나 정책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 FAO, 1995



일부 권리가 보호되어 있다. 이 산물(work)은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ical-ShareAlike 3.0 IGO licence (CC-BY-NC-SA 3.0 IGO;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3.0/igo/legalcode>)에 따라 사용 가능하다.

적절하게 인용된다면, 이 라이선스의 조건에 따라 이 산물은 비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복사, 재배포와 적용될 수도 있다. 이 산물의 사용에 있어서 FAO가 특정 기관, 상품 또는 서비스를 허가했다는 어떤 시사(suggestion)도 있어서는 않된다. FAO의 로고 사용은 허가되지 않는다. 이 산물이 적용된다면, 동일 또는 동등한 Creative Commons licence 하에서 허가(licensed)를 받아야만 한다. 이 산물의 번역이 수행된다면, 필요한 인용과 더불어 다음의 disclaimer를 포함해야 한다: “이 번역은 UN FAO가 수행한 것이 아니다.

FAO는 번역의 내용이나 정확함에 책임이 없다. 원 영어본이 원본 'authoritative edition'이 되어야 한다.”

이 라이선스 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 발생은, 여기에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이선스 8항에서 설명된 중재와 조정에 의해 해결될 것이다. 적용할 수 있는 중재 규칙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http://www.wipo.int/amc/endml> 조정 규칙이고, 조정은 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AL)의 조정 규칙에 따라 수행될 것이다.

제삼자 자료. 표, 그림 또는 이미지 같은 자료들을 제3자에 제공되도록 (attributed) 재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재사용에 대한 허가가 필요한지를 결정하고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에 책임이 있다. 이 상품의 제삼자가 소유한 요인의 저작권 위반으로부터 야기되는 청구(claim) 위험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

판매, 권리와 licensing. FAO 정보물은 FAO 웹사이트 (www.fao.org/publications)에서 찾을 수 있고, publication-sales@fao.org를 통하여 구매 가능하다. 상업적 사용 요청은 www.fao.org/contact-us/licence-request를 통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권리와 licensing 관련 질문은 copyright@fao.org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 ISPM이 재생산되는 경우 최신의 채택된 IPSMs 버전이 www.ippc.int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해야 한다.

공식적인 참고문헌, 정책 결정 또는 분쟁 회피와 해결 목적을 위하여 인용되는 ISPMs는

<http://www.ippc.int/en/core-activities/standards-setting/ispm/#614> 하에 출간된 것이다.

UN 식량농업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출판하였다.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and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본 출판물은 본래 UN FAO에서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hytosanitary Measures(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 기준)*"로 영어로 출판되었다. 본 한국어 번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마련하였다."

“이 정보물 내에 적용된 명칭(designation)과 자료의 표현(presentation)은, 법적 또는 어느 나라의 개발 상태, 영토, 도시 또는 지역 또는 이들의 권한과 관련되거나 또는 국경 또는 영역의 경계 설정과 관련된 UN의 세계 식량 및 농업기구(FAO)의 부분에 대한 어떠한 의견 표명을 전혀 의미하지 않는다. 특정 회사 또는 생산자의 물품에 대한 언급은, 이들이 특허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이들이, 언급되지 않은 유사한 다른 것에 우선하여, FAO에 의해 승인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정보물에 표현된 의견은 저자들의 의견이며 FAO의 의견이나 정책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2023 (한국어 번역)"

"© FAO, 1995-1995 (영문판)"

출간 이력

이 부분은 본 기준의 공식적인 부분은 아님

1993-05 TC-RPPOs가 병해충무발생 지역을 주제로 추가(1993-001)

1993-05 전문가작업단이 초안을 작성

1994-05 CEPM-1이 초안을 수정하고 충분한 세부사항을 제공하도록 요청

1995-05 CEPM-2가 채택을 위하여 초안을 수정

1995-11 28차 FAO 총회가 기준을 채택

ISPM 4. 1995. 병해충무발생 지역 설정을 위한 요건. 로마, IPPC, FAO

2015-06 IPPC 사무국은 소소한 수정을 반영하고 CPM-10(2015) 결정된

기준 절차 폐지에 따라 기준을 변경(reformatted)함

2017-04 CPM은 “무역 파트너(trade partner)” 사용을 회피하기 위한 소소한

수정을 인지함. IPPC 사무국은 소소한 수정을 반영.

출간 이력은 최종으로 2017-04에 업데이트됨

차례

채택

서론

범위

참고문헌

정의

요건의 개요

요건

1. 병해충무발생 지역(PFA)의 일반 요건
 - 1.1 PFA의 결정
 - 1.2 PFA의 설정 및 유지
 - 1.2.1 무발생 설정 시스템
 - 1.2.2 무발생 유지를 위한 식물위생조치
 - 1.2.3 무발생이 유지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 1.3 문서화 및 검토
2. 여러 유형의 PFA의 특정 요건
 - 2.1 국가 전체
 - 2.1.1 무발생 설정 시스템
 - 2.1.2 무발생을 유지하기 위한 식물위생조치
 - 2.1.3 무발생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checks)
 - 2.1.4 문서화 및 검토
 - 2.2 제한된 감염 지역이 존재하는 국가 내 미감염 부분(part)
 - 2.2.1 무발생 설정 시스템
 - 2.2.2 무발생을 유지하기 위한 식물위생조치
 - 2.2.3 무발생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 2.2.4 문서화 및 검토
 - 2.3 전반적으로 감염된 지역 내에 위치한 국가의 미감염 부분
 - 2.3.1 무발생 설정 시스템
 - 2.3.2 무발생을 유지하기 위한 식물위생조치
 - 2.3.3 무발생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 2.3.4 문서화 및 재검토

채택

이 기준은 1995년 11월 제28차 FAO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서론

범위

이 기준은 병해충무발생 지역(PFAs)에서 수출되는 식물, 식물성 산물 및 기타 규제물품의 식물위생증명을 위한 위험관리 방안으로서, PFAs를 설정 및 사용하기 위한 요건과, 위험 PFA의 보호를 위해 수입국에 의해 취해지는 식물위생조치에 대한 과학적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기술한다.

참고문헌

이 기준은 ISPMs를 참고한다. ISPMs은 국제식물위생 포탈(IPP) www.ippc.int/core-activities/standards-setting/ispm에서 찾을 수 있다.

FAO. 1990. FAO 식물위생용어집. FAO Plant Protection Bulletin, 38(1):5-23 (현 ISPM 5(식물위생용어집)과 동일)

IPPC. 1997. 국제식물보호협약. 로마, IPPC, FAO.

WTO. 1994.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대한 협정. 제네바, 세계무역기구.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된 식물위생 용어들의 정의는 ISPM 5에서 찾을 수 있다.

요건의 개요

“병해충무발생 지역”은 “특정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고 있음이 과학적 증거에 의해 입증되며, 적절한 경우 이 조건이 공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지역”이다.

국가식물보호기관(NPPO)에 의한 PFA의 설정과 이용은, 특정(certain) 요건이 충족될 경우, 추가로 식물위생조치를 적용할 필요 없이, 동 지역이

위치한 국가(수출국)로부터 다른 국가(수입국)로 식물, 식물성산물 및 다른 규제물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어떤 지역의 병해충 무발생 상황은, 언급된 병해충과 관련하여 식물, 식물성 산물 및 다른 규제물품의 식물위생증명을 위한 기초로 사용될 수도 있다. 또한 이는 병해충 위험평가의 한 요소로서, 어떤 지역에 언급된 병해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과학적 근거의 확인을 제공한다. PFA는 위험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국이 취하는 식물위생조치를 정당화하는 요소들 중의 하나이다.

비록 “병해충무발생지역”이란 용어가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는 국가 전체부터, 병해충이 만연하고 있는 국가에 위치한 병해충 발생이 없는 작은 지역까지) 모든 범위의 유형을 포함하더라도, 아래의 3가지 유형 정의에 의해 PFAs의 요건을 논의하는 것이 편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 국가 전체
- 제한된 감염 지역이 존재하는 국가 내 미감염 부분
- 전반적으로 감염된 지역 내에 위치한 국가의 미감염 부분

이들 각각의 경우에, PFA는, 적절한 경우, 여러 국가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된다.

PFA의 설정 및 이후 유지에 다음 3가지 주요한 요소 또는 단계가 검토된다:

- 무발생을 설정하는 시스템
- 무발생을 유지하기 위한 식물위생조치
- 무발생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checks)

이들 요소들의 특성은, 병해충의 생물적 특성(biology), PFA의 유형 및 특성 그리고 병해충위험분석에 근거하여 요구되는 식물위생 안전성 (security)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그리고 이들 요소들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은 다음을 포함할 수도 있다:

- 자료 취합
- 조사 (경계 설정, 검출, 모니터링)
- 법적 관리
- 감사 (재검토 및 평가)
- 문서화 (보고서, 워크플랜)

1. PFA의 일반적 요건

1.1 PFA의 결정

PFA의 경계 설정은 관련 병해충의 생물적 특성과 관련되어야 한다. 이것은 어떤 PFA를 정의할 수 있는 크기와 경계 설정을 할 수 있는 경계선(boundaries)의 형태에 영향을 미친다. 원칙적으로, PFA는 병해충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 하에 경계가 정해져야 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쉽게 인식이 가능한 경계선에 의해 경계 설정되며, 수용 가능하게 병해충의 생물적 한계와 일치하도록 검토된다. 이는 행정구역(예, 국가, 지방 또는 공동체(commune) 경계(borders)), 물리적 지형(예, 강, 바다, 산악, 도로) 또는 모든 관련자들에게 명확한 토지 경계(property boundaries)일 수도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실제적 이유로,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 지역 내에 PFA를 설정하여서 PFA의 정확한 경계를 설정할 필요성을 회피하도록 결정될 수도 있다.

1.2 PFA의 설정 및 유지

PFA를 설정하고 유지하는 데에는 3가지 주요 요소가 있다. 이들은 다음과 같다:

- 무발생을 설정하는 시스템
- 무발생을 유지하기 위한 식물위생조치
- 무발생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이들 요소들의 특성은 다음 사항에 따라 다르다:

- 병해충의 생물학적 특성(biology)은 다음을 포함한다:
 - 생존 잠재력 (potential)
 - 증식율
 - 전파 수단
 - 기주식물의 존재 (availability) 등
- 관련된 PFA의 특징은 다음을 포함한다:
 - 크기

- 거리 정도
- 생태적 조건
- 균질성(homogeneity) 등

- 실시된 병해충위험분석에 따라, 평가된 위험수준과 관련되어 요구되는 식물위생 안전성의 수준

ISPM 6(예찰 지침)과 ISPM 2(병해충위험분석 개요)는 일반적인 예찰(surveillance) 및 특정 조사의 요건에 대해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1.2.1 무발생 설정 시스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적인 2개 형태의 시스템이 인정된다. 이들 2개 시스템은 변경되거나 조합하여 사용될 수도 있다. 이들은 다음과 같다:

- 일반적 예찰
- 특정 조사

일반적 예찰

여기에는 NPPOs, 기타 국가 및 지방 정부기관, 연구소, 대학, 학회 (아마추어 전문가 포함), 생산자, 자문관, 박물관 및 일반 대중 같은 모든 데이터의 모든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정보는 아래와 같은 곳에서 수집될 수도 있다.:

- 과학 및 무역 저널
- 미간행된 역사적 데이터
- 당시의(contemporary) 관찰사항(observations)

특정 조사

여기에는 검출 또는 경계설정 조사가 포함될 수도 있다. 이는 공적 조사이며, 해당 NPPO에 의해 승인을 받은 계획에 따라야 한다.

1.2.2 무발생 유지를 위한 식물위생조치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별한 조치가 사용될 수 있다:

- 다음과 같은 규제 활동:
 - 검역병해충 목록에 해당 병해충의 등재
 - 특정 국가 또는 지역으로의 수입 요건 명기
 - 원산지대를 포함한 어떤 국가(들)의 지역 내로 특정 산물의 이동을 제한
- 정기적인 모니터링
- 생산자들에 지도소 조언(extension service)

병해충 무발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식물위생조치를 적용하는 것은, 생태적 조건이 그 병해충이 정착하기에 적합한 PFA 또는 PFA의 일부분에서만 정당화된다.

1.2.3 무발생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어떤 PFA의 병해충 무발생 상태를 확인하고, 내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PFA를 설정한 후 병해충 무발생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지 점검 되어야하고, 유지를 위한 식물위생조치가 시행된다. 사용되는 점검 시스템(checking system)의 강도는 요구되는 식물위생 안전과 연관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도 있다:

- 수출되는 화물의 임시 검사(ad hoc inspection)
- 연구자, 조언자 또는 검사자들이 NPPO에 그 병해충의 발생에 대해 통보하는 요건
- 모니터링 조사(monitoring surveys)

1.3 문서화 및 재검토

PFA의 설정 및 유지는 적절히 문서화되고 정기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PFA의 종류가 어떤 것이든, 적절하다면 다음 사항에 대한 문서가 가용해야 한다.

- PFA를 설정하기 위해 취합된 데이터
- PFA를 뒷받침하기 위해 취해진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
- PFA의 경계 설정
- 적용된 식물위생 규정

- 사용된 예찰, 조사 및 모니터링 시스템의 기술적인 세부 사항

NPPO가 모든 관련 세부 사항과 함께, PFA에 관한 문서를 중앙정보기관 (FAO 또는 지역식물보호기구)에 송부하여, 동 정보가, 관심 있는 모든 NPPOs가 요청 시, 의사소통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유용할 수도 있다.

높은 수준의 식물위생 안전성을 제공하기 위해 PFA의 설정과 유지에 복합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 양자 간 협정에 근거한 운영계획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한 계획에는 PFA가 위치한 국가의 생산자 및 무역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포함하여, 동 PFA의 운영에 요구되는 활동의 특정 세부 사항이 목록화된다. 이러한 활동은 정기적으로 재검토되고 평가되며, 그 결과는 운영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

2. 다른 유형의 PFA에 대한 특정 요건

“병해충무발생지역”이란 용어는 모든 유형의 PFAs의 스펙트럼을 포함한다. 편의상 PFA의 요건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자의적인 유형의 병해충무발생 지역으로 구분하여 논의 된다.

- 한 국가 전체
- 제한된 감염 지역이 존재하는 국가 내의 미감염 부분
- 전반적으로 감염된 지역 내에 위치한 국가의 미감염 부분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PFA는, 적절하다면 여러 국가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될 수 있다. 3가지 유형의 병해충무발생지역에 대한 특정 요건은 아래와 같다.

2.1 국가 전체

이 경우에, 특정 병해충에 대한 전체 국가의 무발생은 한 NPPO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정치적 단위에 적용된다.

요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도 있다.

2.1.1 무발생 설정 시스템

일반 예찰 및 특정 조사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는 모두 수용 가능하다. 이들 자료는 서로 다른 종류 또는 정도의 식물위생 안전성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2.1.2 무발생을 유지하기 위한 식물위생조치

여기에는 1.2.2항에서 언급되었던 것들이 포함될 수도 있다.

2.1.3 무발생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여기에는 1.2.3항에서 언급되었던 것들이 포함될 수도 있다.

2.1.4 문서화 및 재검토

여기에는 1.3항에서 언급되었던 것들이 포함될 수도 있다.

2.2 제한된 감염 지역이 존재하는 국가 내의 미감염 부분

이 경우, 병해충의 분포는 NPPO에 의해 결정된 바에 따라 국가의 일부분에 제한된다. 병해충 집단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공적 방제가 적용된다. PFA는 미감염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될 수도 있다.

요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도 있다.

2.2.1 무발생 설정 시스템

보통 PFA 상태는 특정 조사로부터의 확인에 근거한다. 감염의 정도(extent)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적 경계설정 조사가 사용될 수도 있으며, 추가적으로 해당 병해충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미감염 지역에서 공적 검출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일반 예찰(위의 2.1.1 참조)은 적절하다면, 제한적인 감염 지역이 존재하는 한 국가의 미감염 부분에 적용될 수도 있다.

2.2.2 무발생을 유지하기 위한 식물위생조치

여기에는 1.2.2항에서 언급된 것들이 포함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유형의 PFA에서는 1.2.2항에 언급된 것과 같이, 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 지역으로부터 미감염 지역으로의 품목들의 이동에 대해서 식물위생 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2.2.3 무발생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여기에는 1.2.3항에서 언급된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모니터링 조사는 전체 국가가 관련된 PFA보다, 이런 유형의 PFA에 있어 더욱 중요성이 있다.

2.2.4 문서화 및 검토

문서화에는 1.3항에 언급되어 있듯이 조사 결과(survey results), 식물위생 규정 및 NPPO에 대한 정보와 같은 공적 방제를 기술하는 근거 증거가 포함될 수도 있다.

2.3 전반적으로 감염된 지역 내에 위치한 국가의 미감염 부분

이 유형의 PFA는, 전반적으로 감염된 지역 내에서 특정 병해충이 없도록 만든(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지역이다. 병해충 무발생이 유지되고, 그래서 수출국은 이 상태를 식물 및/또는 식물성산물의 식물위생증명을 위한 기초로 사용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감염 상황이 특정 조사에 근거하지 않은 지역 내에 PFA가 설정될 수도 있다.

PFA는 병해충의 생물적 특성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격리되어야 한다.

요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3.1 무발생 설정 시스템

이 유형의 PFA를 위해서는 경계설정 및 탐지 조사가 요구될 것이다.

2.3.2 무발생을 유지하기 위한 식물위생조치

여기에는 1.2.2항에서 언급된 것들이 포함될 수도 있다. 이 유형의 PFA에서는, 1.2.2항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 지역에서 미감염 지역으로 기주 물질의 이동에 대한 식물위생 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2.3.3 무발생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여기에는 1.2.3항에서 언급된 것들이 포함될 수도 있다. 이 유형의 PFA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조사(ongoing monitoring surveys)가 요건이 되기 쉽다.

2.3.4 문서화 및 재검토

문서화는 1.3항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조사 결과, 식물위생 규정 및 NPPO에 대한 정보와 같은 공적 방제를 기술하는 근거 증거가 포함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유형의 PFA에는 수출 및 수입국 간의 협정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입국의 NPPO에 의해 이행이 검토되고 평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